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65

발의연월일: 2024. 8. 22.

발 의 자:황 희·어기구·이용선

한민수・박 정・이기헌

김태년 • 차지호 • 이학영

문진석 • 박수현 • 문대림

민홍철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하여 지하차도 및 터널 등 도로시설이 침수되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.

그런데 위와 같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서 도로시설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설비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설비에 대한 설치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.

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을 차 단하거나 천재지변 등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 추고, 도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경고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(안 제50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0조의3(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의 설치 등) ① 도로관리청은 천 재지변, 도로의 파손,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차도, 터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- 1. 통행을 차단하는 설비
- 2. 천재지변, 화재를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
- ② 도로관리청은 낙석, 산사태,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간에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 및 경고표지의 설치 기준,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된 지하차도, 터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 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<u><신 설></u>	제50조의3(안전사고 예방을 위한		
	설비의 설치 등) ① 도로관리		
	청은 천재지변, 도로의 파손,		
	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		
	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		
	하여 지하차도, 터널 등 대통령		
	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다음 각		
	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		
	1. 통행을 차단하는 설비		
	2. 천재지변, 화재를 감지하고		
	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		
	② 도로관리청은 낙석, 산사태,		
	하천 범람 등으로 인하여 도로		
	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으로		
	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간		
	에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		
	<u>다.</u>		
	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		
	비 및 경고표지의 설치 기준,		
	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		
	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		